공화국외국투자관계법에 대한 리해

강정 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것을 장려하며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관계되는 법들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94권 266폐지)

최근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우리 나라에서의 외국투자관계법제정을 놓고 《개혁, 개방의 시초》, 《정책에서의 변화》인듯이 떠벌이고있다. 이것은 사실을 오도한 궤변이다.

우리 나라에서 외국투자관계법문제는 오늘에 와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새 사회건설의 첫 시기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공화국외국투자관계법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자면 무엇보다먼저 그 발생발전과 정에 대하여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외국투자관계와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 하고 공화국이 창건된 이후부터 외국투자기업이 창설운영되였다.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갓 해방된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수 준은 매우 한심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는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무역화 물수송을 맡아할 배 한척은 물론 그것을 만들어낼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도 없었고 경험 있는 배기술자도 선원들도 없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갓 해방된 우리 나라 경제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대외무역화물수송을 다른 나라들과 공동해운회사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이에 따라 북조선인민위원회와 당시 쏘련 외국무역성사이에는 주체 36(1947)년 3월과 4월 《조선-쏘련해운주식회사조직에 관한 협정》과 《조선-쏘련해운주식회사조직에 관한 협정》과 《조선-쏘련해운주식회사조직에 관한 협정리행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되였다.

협정과 합의서에 기초하여 주체37(1948)년 12월 평양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주식회사형태의 외국인투자기업인 조선-쏘련해운주식회사가 창설되였다.

공화국정부는 1년동안의 회사운영과정에 축적된 경험에 토대하여 주체38(1949)년 12월 내각결정으로 《조선-쏘련해운주식회사규정》을 채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외국투자관계법이 채택됨으로써 조선-쏘련해운주식회사의 관리운영사업은 정규화되고 공화국령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운영할수 있는 법적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정전직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공화국령역에로의 투자를 희망하였지만 이러한 요구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경제봉쇄책동과 《국제분업》을 형성하고 여기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를 비방중상하는 수정주의자들의 책동때문에 실현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실태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유한책임회 사형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시험적으로 창설운영하면서 경험을 쌓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공화국정부는 주체54(1965)년 11월 뽈스까정부와 《공동해운회사조직에 관

한 협정》을 체결하고 주체55(1966)년에는 내각결정으로 《유한책임회사규정》과 《회사등록 규정》, 《회사파산규정》들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규정들은 조선 — 쏘련해운주식회사를 창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얻은 성과와 경험 그리고 당시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한 립법적조치였다.

이에 기초하여 주체56(1967)년 2월 평양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유한책임회사형태의 외국인투자기업인 조선-뽈스까공동해운회사가 창설되였다. 회사는 창설된후 첫 두해동안에만도 세계 10여개 나라의 30여개 항들을 대상하여 수십만t의 무역화물을 수송하였을뿐아니라 100여명의 우수한 선원들과 능력있는 선박일군들을 양성하였다.

뿐만아니라 주체73(1984)년과 주체74(1985)년에는 합영관계법들이 제정공포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고 오랜 기간의 시험적단계를 거치면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폭넓게 발전시키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73(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결정《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가 채택되였으며 그해 9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 제10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이, 주체74(1985)년 3월에는 정무원결정 제14호로 《합영법시행세칙》이 제정공포되였다. 그리고 주체74(1985)년 3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 제12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회사소득세법》이, 같은 해 5월에는 정무원결정 제22호로 《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이 제정공포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의 대외경제환경은 크게 변하였다.

합영관계법제정이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와 경제합작과 기술교류를 진행할것을 새롭게 요구하여왔으며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으로 우리 나라의 대외경제관계에서 기본으로 되여있던 사회주의시장도 없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외국투자를 통한 대외경제적련계를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방침에 따라 1990년대 전반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 등 외국투자관계를 규제하는 수많은 법과 규정이 제정공포되고 정연한 외국투자관계법체계가 확립되였다.

공화국외국투자관계법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자면 다음으로 외국투자관계법체계에 대하여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

외국투자관계법체계는 외국투자관계를 규제한 법규범과 법부문들로 이루어진 외국투 자관계법의 총체적인 내부구조이다.

외국투자관계법체계에는 외국투자의 기본원칙을 규제한 헌법적규범이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 제37조는 외국투자의 기본원칙을 규제한 헌법적규범으로 된다. 여기에는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이 조문은 공화국령역에서의 외국투자활동에 대한 헌법적담보를 주는 조문으로서 외 국투자관계를 규제하는 모든 법과 규정의 제정 및 집행기초로 된다. 외국투자관계법체계에는 외국투자의 기본법전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은 외국투자관계의 기본법으로 된다.

여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이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며 그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용어의 정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의 창설, 외국투자 가의 권리와 리익보호, 경영활동조건보장, 투자당사자, 투자부문 및 투자방식, 투자장려부 문, 투자의 우대, 특수경제지대에서의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보장, 외국투자가들의 입출 국편리보장, 투자의 금지 및 제한대상, 투자재산과 재산권, 지사, 사무소, 대리점의 설립, 법인자격대상, 토지의 임대기간, 로력의 채용, 세금의 납부, 리윤의 재투자, 투자재산의보호, 리윤과 기타 소득의 국외송금, 경영비밀의 보장, 분쟁해결과 같은 외국투자의 일반원칙과 질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제하고있다.

외국투자관계법체계에는 외국투자관계를 부문별로 규제한 법과 규정들이 있다.

우선 외국투자의 직접투자실현을 담보하는 법과 규정이 있다.

대표적인것이 외국투자기업관계법과 그 시행규정, 외국투자은행법과 그 시행규정 들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공화국령역안에 창설한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이 속하며 외국기업에는 공화국령역안에서 소득원천이 있는 외국의 회사, 상사, 기타 경제조직이속한다.

외국투자기업관계법과 그 시행규정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과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과 그 시행규정들,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 법과 규정들이 외국투자의 직접투 자실현을 위한 법과 규정으로 되는것은 그 내용이 직접투자에서 기본을 이루는 외국인투 자기업의 창설, 운영, 해산제도로 일관되여있기때문이다.

외국투자은행은 합영은행, 외국인은행, 외국은행지점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합영은행은 공화국은행과 외국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운영하고 출자몫에 따라 리익금을 분배하는 은행이며 외국인은행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설립운 영하는 은행이며 외국은행지점은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은행본점이 투자하여 설립한 은 행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과《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외국투자은행회계계산규정》등이 외국투자은행관계를 규제하는 법과 규정에 속한다. 이 법과 규정들이 직접투자실현을 담보하는 법과 규정으로 되는것은 법과 규정의 내용이 외국투자은행의 설립 및 해산, 업무제도로 일관되여있기때문이다.

또한 외국투자의 활성화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규정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을 비롯한 법들과 수십여개의 규정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법과 규정들이 외국투자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법과 규정으로 되는것은 법과 규정의 내용이 외국투자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고 외국투자가의 투자재산에 대한 담보 및 특혜내용으로 일관되여있기때문이다. 또한 외국투자활동조건보장을 위한 법과 규정이 있다.

대표적인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과 《토지임대법시행규정》, 《라선경제무역지대 건물양도 및 저당규정》이다. 이 법과 규정이 외국투자활동조건보장을 위한법과 규정으로 되는것은 법과 규정의 내용이 외국투자기업창설에 없어서는 안될 토지임대, 토지리용권의 양도 및 저당, 토지임대료, 토지리용권의 취소 및 반환, 건물양도 및 저당제도 등으로 일관되여있기때문이다.

또한 외국투자활동을 조절통제하는 법과 규정이 있다.

대표적인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이다. 이 법과 시행규정이 외국투자활동을 조절통제하는 법으로 되는것은 법과 규정의 내용이 외국투자의 대상에 따라 세금의 종류와 납부대상을 서로 달리 규제하고있기때문이다.

이밖에도 개별적인 법규범을 포함하고있는 법과 규정들이 있다.

우리는 공화국외국투자관계법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지고 대외경제관계에서 우리 당대외경제정책의 정당성을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것이다.